투자일임계약서

(주)매트릭스투자자문

K-25-0926-1

투자일임계약서

(성명)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매트릭스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은 고객의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투자자금 (이하 "투자일임재산"이라 한다) 운용에 대해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대해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해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내용)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본 계약의 세부계약조건 내용은 <별지 1>에 따른다.

제3조(투자대상)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
2.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3. 국내 및 해외 채권(국공채, 회사채 등)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에 규정된 각 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에 규정된 파생상품
6. 상장지수펀드 (각종 ETF)
7. 그 밖의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상품

제4조(투자일임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임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1.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유가증권 등 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4. 유가증권 등 투자대상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5. 유가증권 등 투자대상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제5조(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1. 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결과에 대한 보고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전략에 대한 보고
4.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투자일임수수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 대가로서 <별지1>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1. 기본수수료: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별지1>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월1회 후취로 징수하는 수수료로, 월 단위 운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운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2.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한 수익률 초과분에 대하여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매 결산일(계약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마다 정산하여 고객이 회사에게 지급한다.

② 계약의 중도해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2> 투자일임수수료에 대한 약정서의 중도해지수수료를 적용한다.

제7조(회사의 신의성실 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투자대상자산, 위험선호정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다.

제9조(운용계획서 및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① 계약기간동안 회사는 고객에게 분기1회 이상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서면 제출하고 설명해야 한다. 단,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일임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제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5.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등

7.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 (시기, 실적, 잔액)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 계약자간에 정한 사항

제10조(투자일임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자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일임담당자를 선임한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일임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담당자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은 제4항 단서에 의한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투자일임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내용과 관리현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효력을 갖는다.

제12조(통지의무)
① 고객은 거래증권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지정된 투자일임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우편,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운용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4조(회사의 금지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 차익거래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8. 특정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10.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인 경우
    나. 증권시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인 경우
    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경우
11.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2.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단, 개별 고객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3.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단, 주식매수권의 행사,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유상증자의 청약, 전환권의 행사, 파생결합증권의 권리 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

14.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5.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16.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17.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18.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내역에 대한 고객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

②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고객의 운용지시 포함)로 인한 손해

제16조(계약의 유효기간)

① 투자일임계약의 유효기간은 <별지1>에서 정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 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

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 목적 등의 변경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는 경우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실행된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하여 그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계약, 만료, 해지시의 재산형태)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재산형태와 만료(해지 포함)하는 시점에서 고객에게 반환하는 재산형태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증권으로 한다. 단, 증권의 경우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물에 한정한다.

제19조(투자일임재산의 평가) 제18조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 계약해지 시에는 해지일 전일, 계약만료 시에는 만료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기준일 다음 영업일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에 의한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
2.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에 의한다.

제20조(투자실적의 평가)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투자일임재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한다. 평가자산의 계산은 제19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②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 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락 가격,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제21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 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3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 체결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고객) 성 명 : (인) (*법인의 경우 : 법인명)
주 소 :
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상 호 : ㈜ 매트릭스투자자문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3, 맨하탄빌딩 812호
대표이사 : 곽 상 준 (인)

<별지 1>

세부계약조건

1.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 (최소 3년 이상)

2. 투자일임재산 : 원정 (₩)
*최소계약금액 : 50,000,000원

3. 투자대상 자산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국내 및 해외 채권(국공채, 회사채 등), 상장지수펀드(국내 및 해외 ETF)

4. 투자일임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하며,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본수수료 : 투자일임재산의 **월 0.1% 후취**
· 성과수수료 : <별지 2> 약정서 기준에 따라, 고객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중도해지 수수료 : <별지 2> 약정서 기준에 따라, 고객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5. 수수료 지급방법 : 수수료는 고객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금융결제원 CMS(자동이체) 방식으로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매월 5일** 출금·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출금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출금)

6. 투자일임담당자 : 곽상준

7. 거래증권사 및 계좌
· 증 권 사 : NH투자증권
· 계좌번호 :
· 계 좌 명(고객 성함) :

8. 고객에 대한 통지방법(우편 또는 E-mail 중 선택 가능.)
· 투자일임보고서 등의 수령 방법 : 우편 □ E-mail □
· 주 소 :
· E-mail : / 핸드폰:

9. 투자위험
. 1 등급(매우높은위험)으로 총(6)단계 중 (1)번째 높음. 따라서 투자자성향이 공격투자형 이상인 고객에게 적합.
. 본 투자일임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고객은 투자 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고객이 부담함.

10. 기타사항
연체수수료 없음.

<별지 2>

투자일임수수료에 대한 약정서(NEO-N형)

투자일임계약서상의 기본수수료 및 성과수수료에 대해 고객과 회사는 다음과 같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기본수수료

(1) **수수료율** : 투자일임재산 평가금액의 **월 0.1%**

- 월 단위 운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운용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예) 8월 15일에 계약한 경우,
  (투자일임재산 X 0.1% X 16/31)로 계산

- 투자일임재산 입·출금이 발생한 경우, 잔고 변동분을 발생일부터 반영하여 일할 계산
  예) 8월 15일에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한 경우,
  ((1억 X 0.1%) X 14/31 + (1억 5천만원 X 0.1%) X 17/31)로 계산

2. 성과수수료

(1) **기준수익률** : 연 **8%**

(2) **수수료율** : 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15%**

(초과수익 = 투자수익 - [(투자일임재산 X 8%) X (운용일수/365)])

※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3) **하이워터마크(High Water Mark) 적용**

- 하이워터마크란 직전 성과수수료 산정 기준일의 평가액 또는 최초 투자원금 중 큰 금액을 의미한다.
- 평가액이 하이워터마크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성과수수료를 부과하고 해당 평가액을 새로운 하이워터마크로 상향 조정한다.
- 평가액이 하이워터마크 이하인 경우, 성과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 **성과수수료 계산기간 및 징수시기**

· **중도 입·출금 및 해지 미발생 시**

계산기간 : 계약일로부터 **매 1년간**

징수시기 : 계산기간 종료일 **다음 영업일**

· **중도 입·출금 발생 시**

계산기간 : 계약일 또는 직전 성과수수료 징수 기준일로부터 해당 입·출금 발생일

징수시기 : 계좌에 현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입·출금 발생 **다음 영업일**

단,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잔액이 확보되는 즉시 성과수수료를 징수

* 입·출금 및 중도해지 발생 시 당일 장마감 기준 투자일임재산 평가금액으로 성과수수료 기준금액 산정

3. 최소 계약유지금액

(1) 계약기간 중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에 대해 중도 입·출금이 가능하며, 출금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이 최소 계약유지금액 5천만원(₩50,000,000)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2) 고객의 출금 등으로 인하여 투자일임재산이 최소 계약유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중도해지수수료

(1) 고객은 계약기간 중 투자일임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 시에는 아래 각 호에 따른 해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해지 시	해지일 기준 이익금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해지 시	해지일 기준 이익금의 30%
계약일로부터 2년 초과 3년 이내 해지 시	해지일 기준 이익금의 20%
계약일로부터 최소 3년 초과 해지 시	해지 수수료 없음

(2) 중도해지 수수료 산정 시 '이익금'이라 함은, 하이워터마크 대비 상승한 금액을 의미한다.

ex) 계약금액 1억의 평가금액이 상승하여 1억 2천만원이 될 경우, 2천만원을 이익금으로 산정한다.

(3)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 수수료는 해지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고객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회사 지정 계좌로의 출금은 통상 해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완료된다.

(4)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5. 투자권유의 업무위수탁계약에 따라 투자일임수수료의 일부를 투자권유를 수행한 수탁사에게 지불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고객) 성 명 : (인) (*법인의 경우 : 법인명)
주 소 :
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회사)상 호 : ㈜ 매트릭스투자자문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3, 맨하탄빌딩 812호
대표이사 : 곽 상 준 (인)

<별첨>

손실발생 후 재계약 시 성과수수료 기준금액의 산정 방법

원금손실이 발생하여 계약을 연장(재계약)하는 경우, 아래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성과수수료 책정을 위한 기준금액(이하 성과수수료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1. 투자일임자재산 평가금액 전액을 재계약 하는 경우

직전 성과수수료 기준금액과 재계약시 성과수수료 기준금액이 동일하며, 평가금액이 성과수수료 기준금액에 도달하기 전까지 성과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전년도 계약금액 10억 원, 현재 평가금액이 9억 원일 때 그대로 재계약할 경우 - 금년도 재계약금액 = 9억 - 금년도 성과수수료 기준금액(High Water Mark) = 10억

2. 투자일임재산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증·감액 시)

투자일임재산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 성과수수료를 받기 위해 당사가 달성해야 하는 손실보전분 또한 같은 비율만큼 축소됩니다.

중도에 투자일임재산을 증액·감액하시더라도 성과수수료를 받기 위해 당사가 달성해야 하는 손실보전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1) 변경 후 재계약금액 (A)
2) 변경 후 운용손실금액(B) = ((A) / 만료 시 평가금액) X 운용손실금액
3) 성과수수료 기준금액 = (A) + (B)

예) [감액 재계약] 전년도 계약금액 10억 원, 만료 시 평가금액 9억 원일 때, 5천만원 감액하여 재계약할 경우 - 변경 후 재계약 금액(A) = 9억원 - 0.5억원= 8.5억 - 변경 후 운용손실금액(B) = (8.5억원 / 9억) X (10억 - 9억) = 0.94억원 - 성과수수료 기준금액(High Water Mark) = 8.5억 + 0.94억 = 9.44억